

위험물 운송기준 및 연료유탱크 기준 강화된다

해양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2007년부터 시행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해양오염의 예방이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14일 해양오염의 예방 강화를 위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해상에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선박의 연료유탱크와 펌프룸을 이중구조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부는 개정안은 해양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액체물질의 등급을 조정하고 새로운 유해액체물질도 추가한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안(부속서 I, II)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350종의 유해액체물질중 199종의 등급이 상향조정되고 199개의 새로운 물질이 유해액체물질에 포함되며, 유해액체물질의 양하후 최대 잔유물의 기준도 종전의 100~300리터 이하에서 75리터 이하로 강화된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7.8.1 이후 계약되는 모든 선박(연료유탱크가 600톤 이상인 선박)은 충돌 및 좌초시 연료유에 의한 기름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저와 선측을 이중구조로 하여야 하고, 재하중량통 5000톤 이상의 유조선은 2007.1.1 이후부터 펌프룸을 이중저로 건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적 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총 41개사의 121척으로 국제항해선박 50척(7개 선사), 국

내항해선박 71척(34개 선사)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9월중 입법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04년 10월5일 개정,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관련 규정을 개정,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유해액체물질 분류현황을 보면, A류는 유출시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거나 엄격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물질(49종)이며, B류는 유출시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피해를 미치거나 특별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물질(89종)로 규정하고 있다.

또 C류는 유출시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경미한 피해를 미치거나 특별한 작업조건이 필요한 물질(144종)로, D류는 유출시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인식가능한 피해를 미치거나 작업조건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물질(57종)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분류규정을 보면, X류는 유출시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므로 해양에 배출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72종을 명시하고 있다.

또 Y류는 유출시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피해를 미치므로 해양에 배출되는 량과 질이 제한되는 물질(351종)로, Z류는 유출시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미세한 피해를 미치므로 해양에 배출되는 량과 질에 대한 제한이 덜 엄격한 물질(122종)로 규정했다. 물질별 운송기준은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 시설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